

반납액의 산정기준표(제35조 관련)

구분 \ 기준	반납액
1. 제35조제1호·제3호 해당자	소요경비 전액
2. 제35조제2호 해당자	$\text{소요경비} \times \frac{1}{2}$
3. 제35조제4호 해당자	$\text{소요경비} \times \frac{\text{의무복무월수} - \text{근무월수}}{\text{의무복무월수}}$

비고

- 가. 의무복무월수 및 근무월수의 계산에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.
- 나. 국외훈련을 위하여 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반납고지서 발급일의 현찰매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.
- 다. 제2호 해당자가 다시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추가반납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$$\text{추가반납액} = \text{소요경비} \times \frac{1}{2} \times \frac{\text{의무복무월수} - \text{근무월수}}{\text{의무복무월수}}$$